

瑞山市行政機構設置條例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查經過

가. 提出日字 : 1998. 12. 17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8. 12. 18

라. 上程日字 : 1998. 12. 21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自治行政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행정기구·조직관련 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합하여 기구조정시 관련조례·규칙을 수시 제·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인 요소개선
- 자차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유지

나. 主要骨子

- 분청, 소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등 기구·조직에 대한 조례를 단일조례로 정비
-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조례중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조례에서 배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개편된 기구·조직에 맞게 본청의 국에 관한 설치 및 국장의 분장사무와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의 설치 및 기관장의 관장사무규정
-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의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분리 제·개정토록하여 조직·기구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각기별도의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등 집행부의 조직·기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로 정비하였고,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이외의 기관운영에 관한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분리·제정토록하여 조직·기구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 또한, 기관별 정원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총정원에 기관별 직급변동에 대하여는 관련조례 및 규칙의 개정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방지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본 조례의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폐지 또는 제·개정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완벽한 검토를 거친후 신속조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생략

5. 討 論 : 없었음.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36 호
의 결 년 월 일	1998. 12. 24. (제 36 회)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12. 17.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
----------	----

제출년월일 : 1998. 12. 17.
제출자 : 서산시장

개정이유

- 행정기구·조직 관련조례를 단일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기구조정시 관련 조례·규칙을 수시 제·개정하여야 하는 비능률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 정부의 조례표준모델 지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단체간의 통일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설치등 기구·조직에 대한 조례를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여 단일조례로 정비하였음.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중 법령의 규정과 배치되는 과·담당관의 분장사무를 본 조례에서 배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개편된 기구·조직과 부합되도록 분청의 국에 관한 설치 및 국장의 분장사무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의 설치 및 기관장의 관장사무를 규정하였음.
- 특히, 기구·조직조례를 통합함에 있어 소속기관의 조례중 조직에

관한 사항 이외의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또는 주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분리 제·개정토록하여 조직·기구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 기타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 제15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제11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 기 구 현 황

- 본 청 : 2국 2담당관 15과
- 직속기관 : 2개기관 4과
- 사업소 : 4개사업소
- 읍·면·동 : 1읍 9면 5동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①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직속기관의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및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시본청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및 산업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시 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사회여성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역경제과 및 지적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2. 문서, 복무, 보안, 공인관리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3. 의식·행사, 선거, 주민등록, 자치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4. 조직관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5. 도의 새마을운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세외수입의 조사·부과·징수 및 세무업무에 관한 사항
7. 세출예산의 지출, 계약, 재산관리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호적·병무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전시 비상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역경제, 공업진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1. 지가, 부동산, 지적관리 및 지적정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국 및 담당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산업건설국에 두는 과) ①산업건설국에 산업과, 축산해양과,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교통과를 둔다.

②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에 관한 사항
2. 농업경제, 농지관리 및 양정·유통특작 에 관한 사항
3. 축산 및 해양수산 에 관한 사항
4. 산림행정, 산림보호 및 녹지업무 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보호, 지도·관리 및 청소행정 에 관한 사항
6. 국토이용계획관리 및 시·군·농어촌도로 에 관한 사항
7. 농업기반조성, 치수 및 지역개발 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 및 개발 에 관한 사항
9. 건축 및 주택 에 관한 사항
10. 교통행정, 운수 및 교통안전시설 에 관한 사항

제3장 직 속 기 관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 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서산시 예천동 496-1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기술보급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식량·원예·잠업·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3. 토양비료·병해충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지도
4. 농촌생활 개선에 관한 지도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현장으로 기술 개발
7. 농촌후계인력 및 농업인조직의 육성지도
8. 농업인 교육훈련 및 농업기계관련 기술지도
9. 농업기술 공보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보건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 2와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

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특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4장 사 업 소

제13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4조(관장 및 소장) 사업소에 각각 관장 또는 소장을 두며, 관장 및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별 관장 또는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항과 같다.

①문화회관

1. 관리분야

가. 문화회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문화회관의 관리 및 운영

다. 문화회관 시설의 임대 및 사용허가

라. 문화회관의 임대료, 사용료 수납

마. 입장권 검인 및 매표관리

바. 자체기획한 공연·전시회·초대전등 시민의 문화복지증진
사업

사. 청사방호

아. 일반사무 및 예산운용

자. 기타 타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운영분야

가. 조명, 음향, 영사기 유지관리 및 조작운영

나. 전기, 기계, 시설관리(무대, 냉·난방시설)

②상하수도사업소

1. 업무분야

가. 사업소내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나.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재산관리

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심사

사. 보조금 및 교부금등 수입정리

아. 지방채

자. 공사계약

차. 소내 인사 및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카. 문서, 관인, 보안관리

타. 상·하수도 통계작성

파. 상·하수도 대행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하. 수도계량기 유지·관리

- 거. 상·하수도 사용점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너. 읍·면·동 상수도 인력, 요금, 기타 관계 관리감독
- 더. 사업소내 타담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급수분야

- 가.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 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 다. 상수도용 지하수 개발 및 시설관리
- 라. 광역상수도 관련사업 시행 및 지도·감독
- 마. 간이상수도 신설 및 유지관리
- 바.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 사. 상수도 급수에 관한 사항
- 아. 급수시설공사 시행승인 및 지도·감독
- 자. 도수·급수·배수관 누수방지 및 유지관리
- 차. 저수조 관리
- 카. 중수도에 관한 업무
- 타. 전용상수도 인가
- 파. 읍·면·동 상수도 급·배수관로 관계 관리·감독

3. 하수분야

- 가.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 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발공사 및 관리
- 다. 시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교환업무
- 라.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 마. 하수도 시설 및 개발공사의 시행
- 바. 시설유수지 배수펌프장, 하수처리장의 유지·관리

사. 읍·면·동 하수도 관련업무 지도·감독

4. 시험분야

가. 시설경계 및 경비

나. 정수의 생산·공급

다. 원수, 정수, 수질검사 및 관리

라. 정수약품 관리 및 품질 시험

마. 기타 수질시험과 관련된 업무

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아. 수원지 시설 환경정비 등

자. 각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등 관리운영

차. 수원지 시설물, 공작물 개량 및 유지관리

카. 읍·면·동 취·정수시설 및 수질시험관계 관리·감독

③시립도서관

1. 도서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향토자료 전집류의 수집·정리·보존 및 사회일반 사람들의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회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수납·관리에 관한 사항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6.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전개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 인재육성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및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④종합사회복지관

1. 서무분야

가. 복지관내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복지관내 예산·회계운용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다. 복지관내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복무단속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 및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리. 기타 타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복지1분야

가. 가정·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다. 부녀복지에 관한 사항

3. 복지2분야

가.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증진등에 관한 사항

제4장 읍·면·동

제16조(설치) ①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운영조직,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등 별표 4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항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 한다.

- ①서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 ②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
- ③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 ④서산시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
- ⑤서산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
- ⑥서산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 ⑦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

제3조(보건소·보건진료소 및 문화회관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서산시보건소설치조례, 서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서산시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조직·기구에 관한 사항 이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서산시보건소	서산시 석림동 581-1	서산시일원
서산시보건소 대산보건지소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55-1	대 산 읍
서산시보건소 인지보건지소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255-1	인 지 면
서산시보건소 부석보건지소	서산시 부석면 취평리 361-1	부 석 면
서산시보건소 팔봉보건지소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1295-3	팔 봉 면
서산시보건소 지곡보건지소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59-1	지 곡 면
서산시보건소 성연보건지소	서산시 성연면 평 리 281-5	성 연 면
서산시보건소 음암보건지소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1304-4	음 암 면
서산시보건소 운산보건지소	서산시 운산면 용장리 451	운 산 면
서산시보건소 해미보건지소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441-1	해 미 면
서산시보건소 고북보건지소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617-2	고 북 면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명지보건진료소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산63-1	대로 2, 3리, 기은리, 독곶리, 대죽리
오지보건진료소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산80-6	오지리
모월보건진료소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12-12	야당리, 모월리, 산동리, 애정리
가강보건진료소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397-5	가사리, 강수리
강당보건진료소	서산시 부석면 강당리 687-6	지산리, 칠전리, 강당리, 마룡리
창리보건진료소	서산시 부석면 창 리 247-1	창리, 간월도리
양길보건진료소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453	금학리, 양길리, 대황리, 흑성리
호리보건진료소	서산시 팔봉면 호 리 산102-2	고파도리, 호리, 덕송리
산성보건진료소	서산시 지곡면 산성리 801-3	산성리, 장현리, 연화리, 중왕리
동암보건진료소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51-2	신장리, 유계리, 부장 1리
문양보건진료소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587-3	문양리, 율목리
원평보건진료소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289-9	고풍리, 원평리, 와우리
소중보건진료소	서산시 운산면 소중리 산25-7	가좌리, 소중리, 상성리
기지보건진료소	서산시 해미면 기지리 산14-8	양림리, 기지리, 고북면 신정리
봉생보건진료소	서산시 고북면 봉생리 산14-3	정자리, 봉생리, 사기리
오산보건진료소	서산시 오남동 산42-1	오남동, 장동, 덕지천동

【별표 3】

사업소의 명칭·위치

(제13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문화회관	서산시 읍내동 513
상하수도사업소	서산시 읍내동 478-2
시립도서관	서산시 읍내동 528-14
종합사회복지관	서산시 예천동 496-19

【별표 4】

읍·면·동장의 관장사무

(제17조 관련)

읍·면·동장	분 야	관 장 사 무
대산읍장	총무분야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일반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진흥분야	새마을사업종합추진, 농로개설, 광고물, 체육, 소도읍가꾸기, 전국토공원화운동, 시설물관리
	재무분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부과·징수, 각종사용료부과·징수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일반, 환경, 자연보호, 가정복지, 보건위생, 취로사업, 대산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관리
	도시분야	개별지가조사, 도시계획및도시환경, 시가지계획및구획정리사업, 주택건설및건축사, 건설업자단속, 건축허가및무허가건물단속, 농어촌주택개량및취락구조개선사업
	호병분야	호적, 병사, 주민등록, 인감, 재증명, 민방위, 향토예비군
	산업분야	지역경제, 농업, 농사의개량발달을위한연구, 잠업, 식량, 농지, 농지개량, 수리, 농산물유통관리, 수산, 산림, 수렵, 교통
	건설분야	도로, 교량, 하천, 중기, 자연재해방지대책
부석면장 해미면장	총무분야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일반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체육
	재무분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부과·징수, 각종사용료부과·징수
	복지분야	사회복지일반, 보건위생, 환경, 가정복지, 취로사업
	호병분야	호적, 병사, 주민등록, 인감, 재증명, 민방위, 향토예비군
	산업개발분야	지역경제, 농업, 농사의개량발달을위한연구, 잠업, 식량, 농지, 농지개량, 수리, 농산물유통관리, 산림, 수렵, 도로, 교량, 하천, 중기, 자연재해방지대책, 교통

읍·면·동	분 야	관 장 사 무
인지면장 팔봉면장 지곡면장 성연면장 음암면장 운산면장 고북면장	총무분야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일반공무원의 교양과복리, 사회복지일반, 보건위생, 가정복지, 환경, 새마을종합추진, 농로개설, 자연보호, 광고물, 전국토공원화운동, 시설물관리, 체육, 주택
	재무분야	지방세징수, 세외수입부과·징수, 각종사용료부과·징수
	호병분야	호적, 병사,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민방위, 향토예비군
	산업분야	지역경제, 농업, 농사의개량발달을위한연구, 잠업, 식량, 농지, 농지개량, 수리, 농산물유통관리, 수산, 산림, 수렵, 교통
부춘동장 동문동장 활성동장 수석동장 석남동장		서무, 인사, 선거, 회계, 통계, 문화공보, 체육, 일반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세무(지방세, 세외수입), 주민등록, 제증명, 인감, 병사, 민방위, 개별공시지가, 산업, 산림, 축산, 교통, 지역경제, 사회진흥,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 건축, 건설, 도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자연보호, 광고물